

조중 청수역—상하구역사이 압록강국경철다리관리계선

획정과 보수유지문제에 대한 회의 의 정서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부대표단과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대표단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 따라 조선철도청수역—중국철도 상하구역사이 압록강철다리관리계선 획정과 보수유지에 대한 문제를 1976년 12월 8일부터 8일까지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철다리관리계선의 획정

제1조; 조중 청수역—상하구역사이 압록강철다리는 13M짜리 용크리트보 2개 20M짜리 강판보 25개와 62M짜리 강철트라스 2개 모두 29개의 여러가지 보로되어있다.

쌍방은 이 철다리의 계선을 조선쪽으로부터 세여 16번째 철다리기둥, 중국쪽으로부터 세여 13번째 철다리기둥의 중심선

(철다리우에 철길 수직방향)으로 획정하였다.

조선측은 강관보 16개를 판할하며, 중국측은 콘크리트보 2개
강관보 9개, 강철트라스 2개를 판할한다.

제2조; 이 철다리의 관리계선회정은 1977년 2월말까지
전부 끝내야 하며 그에 따라 이 철다리는 1977년 8월 1일
부터 쌍방철도가 각각 관리한다.

제3조; 이 철다리의 구체적인 관리계선회정과 개선표식(규격
과 방법은 신의주-단동 압록강철다리경우와 같음) 설치사업, 그리고
이 철다리에 대한 형편과 가지고 있는 기술자료교환은 쌍방국경철
도국이 파견한 인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이에 대
한 조서를 작성한다.

공동위원회의 장소와 날자는 따로 합의한다.

철다리의 보수유지

제4조; 이 철다리의 보수유지사업은 각각 자기 나라 철도의 해당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쌍방은 환할구간 철다리의 정상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
제5조; 철다리판리의 편리를 위하여 개선이 지나가는 철다리 기둥과 한쌍의 페투는 중국측이 책임지고 보수유지한다.

제6조; 이 철다리의 대수리는 1978년말 안으로 끝내야 한다.

기 타 문 제

제7조; 이 철다리가 만약 자연재해를 입거나 열차운전사고가 생겨 어느한쪽이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가능한 모든 방조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; 이 의정서는 197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.

이 의정서는 1976년 12월 8일 베이징에서 서명되었으며 조선문과 중국문으로 각각 2부씩 작성된 이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.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

철도부 위임에 의하여

김진호

중화인민공화국

철도부대표단 단장

郭修真